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2 선고 2020가단1264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5. 10. 1.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7,196,252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19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2004. 2. 25. E 주식회사로부터 11,749,053원을 대출받았고, C가 D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D는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06. 5. 2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서 그즈음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D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11. 11. ‘C는 원고에게 17,225,413원 및 그 중 11,749,053원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1. 11. 30. 확정되었다.

④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G, 아들 피고 및 C, 그리고 사망한 아들 H의 가족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⑤ 피고와 C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9. 1. 17.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9. 3. 6.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 주식회사 L, 중소기업은행, M조합, N조합,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O 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 11.의 직전으로 보인다) C는 약간의 예금과 1998년식 포터 트럭(마지막 검사유효기간이 2010. 6. 30.이다), 2015년식 그랜저 승용차의 1% 지분, 2014년식 모닝 승용차의 1% 지분 등 수백만 원 정도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미 원고에 대하여 원금만 17,225,413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1. 17. 채권자 I를 위하여, 2019. 3. 6. 채권자 K 주식회사를 위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자체를 그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처 G 3/9, 아들 피고 및 C, 그리고 사망한 아들 H의 처 등 각 2/9이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O 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2. 6. 22. 기준 시가는 226,585,00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피고가 취득한 C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50,352,222원(= 226,585,00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볼 것이다.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0.을 기준으로 51,210,755원(= 17,225,413원 + 11,749,053원 × (2006. 5. 26.부터 2020. 11. 10.까지 다 갚는 날까지 14년 + 169일/365일) × 연 20%)이다.

원고는 위 두 금액 중 작은 50,352,222원에서 C의 적극재산 3,155,970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043원, M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1,557,927원과 포터 트럭 1,500,000원, 모닝 승용차 1% 지분 45,000원, 그랜저 승용차 1% 지분 50,000원의 합계)을 뺀 47,196,2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47,19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충분한 생전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은 생전에 C에게 재산을 충분히 증여하였기 때문에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이가 원고와 같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

별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이에 따라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제2의 나에 의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